####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18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최은석 · 강승규 · 김용태

김상훈 • 박준태 • 서명옥

이달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 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 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2조(「한국은행법」의 개정)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3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3조(「한국조폐공사법」의 개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ㆍ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4조(「한국투자공사법」의 개정)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체적 · 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임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	제17조(임원의 해임)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	
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5.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못하게 되었을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	
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4.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